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개정·시행 재안내

1. 제사협 2019-1140(2019.7.23.) 관련입니다.
2. 위 관련호로 안내해 드린바 있는 2019. 6. 26일자 개정 사회복지자원봉사사업지침 및 규정·가이드라인을 재안내 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자원봉사자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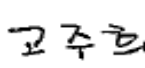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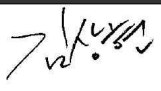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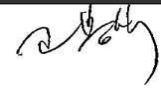
□ 확인 방법

1. 우리 협의회 홈페이지(www.jejubokji.net) '공지사항(1127번)'에서 확인
2. 중점 확인 사항
가. 「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규정」 중 제6조(관리센터 지정 신청 등), 제7조(인증요원의 위촉 및 업무), 제15조(관리센터의 지정사항의 취소)
나. 「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 인정기준 가이드라인 개정」 중 '시간 및 활동 기본인정기준 등'.
끝.

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



수신자 도내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(322개소) 대표

담당자  복지사업부장  사무국장  상근부회장 전결 
협조자

시 행 제사협 2019 - 1742 (2019. 11. 1) 접 수 ()

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-1(화북1동 1112-1) / www.jejubokji.net

전 화 (064)726-5786 전송 (064)702-3383 / jejubokji@hanmail.net / 공개